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진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246

발의연월일: 2021. 7. 1.

발 의 자:김진표·김병기·김수흥

박광온 • 박성준 • 박찬대

설 훈·신정훈·이낙연

장철민 · 천준호 · 홍영표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우리나라는 일반형사 절차와 구별된 별도의 군사법제도를 가지고 있음. 또한 현행법은 군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 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2021년 발생한 공군 여중사 성추행 및 사망사건의 수사과정을 살펴보면 군 내부의 사건 축소·은폐 의혹 등으로 인해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군경찰 및 군검찰, 나아가 군사법제도 전체의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.

특히 군 형사사건의 87.3%가 교통, 폭력, 성범죄 등 군의 특수성과 무관한 범죄이며, 군사기밀보호법, 국가보안법, 군형법 위반 등 소위 순정군사범의 비율은 12.7%에 그치고 있음(*2020.6 국방부 통계). 또 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심판관이 재판관의 지위를 가지는 등의 문제 점 역시 지적되는 상황임. 이에 군사법원의 재판권 및 군검사·군사법경찰의 수사범위를 군형 법상의 범죄 중 군사기밀 등 국가보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범죄에 한정하고 심판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, 군사법제도 개혁의 법적 근거 를 마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형법상 반란, 이적, 군무 이탈, 항명, 군용시설 및 군용물 손괴, 군사기밀 누설, 정치 관여 등 군사 범죄로 한정(안 제2조제4항 신설).
- 나. 법조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 도를 폐지(안 제22조제3항 등).
- 다.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군형법상 강간과 추행, 가혹행위 등과 형법에 규정된 범죄 등 비군사 범죄를 인지한 경우 해당 사건을 민 간 경찰로 바로 이첩(안 제228조제3항).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「군형법」 제5조부터 제47조까지의 죄, 제64조부터 제91조까지의 죄, 제93조 및 제94조의 죄에 한정한다.

제22조제3항 중 "군판사와 심판관으로"를 "군판사로"로 한다.

제24조를 삭제한다.

제25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2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2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27조의2를 삭제한다.

제2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2조제4항에 규정된 범죄 이외의 범죄 사건을 인지한 경우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군사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의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「군사법원법」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·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신분적 재판권) ① ~ ③	제2조(신분적 재판권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
	불구하고, 군사법원의 재판권은
	「군형법」 제5조부터 제47조
	까지의 죄, 제64조부터 제91조
	까지의 죄, 제93조 및 제94조의
	죄에 한정한다.
제22조(군사법원의 구성) ①・②	제22조(군사법원의 구성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재판관은 <u>군판사와 심판관</u>	③ <u>군판사로</u>
으로 하고, 재판장은 선임(先	
任)군판사가 된다.	
제24조(심판관의 임명과 자격) ①	<u><</u> 삭 제>
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	
갖춘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	
서 관할관이 임명한다.	
1.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	
2.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식	
이 충분한 사람	
② 관할관의 부하가 아닌 장교	
를 심판관으로 할 때에는 해당	
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.	

- 략)
 - ② 국방부장관, 각 군 참모총장 | <삭 제> 이외의 관할관이 심판관인 재 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각 군 참모총장인 관할관 이 심판관인 재판관을 지정하 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26조(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) 제26조(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) ①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. 다만,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서는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을 재 판관으로 한다.
 - ②·③ (생 략)
- ①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. 다만,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군판사 3명과 심판관 2명을 재 판관으로 한다.
 - ② (생략)
- 제27조의2(관할관이 지정한 사건 의 정의) 제26조제1항 단서 및

제25조(재판관의 지정) ① (생 제25조(재판관의 지정) ① (현행 과 같음)

서 삭제>

제27조(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) 제27조(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)

② • ③ (현행과 같음)

서 삭제>

②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제27조제1항 단서에서 "관할관이 지정한 사건"이란 각각 관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만 공소제기 된 사건 중 고도의 군사적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서 심판관을 재판관으로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사건을 말한다.

- 1. 「군형법」에 규정된 죄(제2

 편제15장의 강간과 추행의

 죄는 제외한다)
- 2. 「군사기밀 보호법」에 규정

 된 죄

제228조(군검사, 군사법경찰관의 제228조(군검사, 군사법경찰관의 수사) ①・② (생 략) 수사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

제228조(군검사, 군사법경찰관의수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2 조제4항에 규정된 범죄 이외의 범죄 사건을 인지한 경우 해당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여야한다.